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I. 공급개요 및 일정

□ 공급위치 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5-14번지 일원

□ 공급규모 : 지하 2층 ~ 지상 15층, 2개동, 총 121세대 中 기관추천 특별공급 6세대

□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(전용85㎡이하 주택 건설량의 10%범위)

(단위: m²)

	주택형 (주거전용 면적기준)	세대별 계약면적(㎡)					배정	017
구분		주택공급면적			기타공용	합계	배정 세대수 (예비)	입주 예정시기
		주거전용	주거공 용	소계	1466	급계	(예비)	1011
민영 주택	54A	54.9900	19.1300	74.1200	44.7600	118.8800	2(6)	`24년 9월
	54B	54.9900	19.0800	74.0700	44.7600	118.8300	2(6)	
	59A	59.9900	20.1500	80.1400	48.8300	128.9700	2(6)	
	59B	59.9900	20.8200	80.8100	48.8300	129.6400	-	(예정)
	67	67.0400	22.0900	89.1300	54.5700	143.7000	-	
	74B	74.9900	22.9700	97.9600	61.0500	159.0100	-	

^{*}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인천시청의 승인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□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

(단위 : 세대)

구 분			54m²A	54m³B	59 ㎡ A	계
기관 추천	국가유공자		_	_	1(3)	1(3)
	장기복무 제대군인		-	-	1(3)	1(3)
	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		-	1(3)	-	1(3)
	중소기업 근로자		-	1(3)	-	1(3)
	장애인	경기도	2(6)	-	-	2(6)
		서울특별시	-	-	i	-
		인천광역시	_	_	İ	-
계			2(6)	2(6)	2(6)	6(18)

^{* 2018.05.04.}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,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□ 분양일정(예정사항)
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입주자모집공고	2022.07.29.(금)	- 한국부동산원 "청약Home"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
특별공급 접수일시	2022.08.08.(월)	- 한국부동산원 "청약Home"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(09:00 ~ 17:30) ※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
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(예비당첨 & 예비순번 발표)	2022.08.18.(목)	- 한국부동산원 "청약Home"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*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네이버인증서 및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

[※]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※]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까지 가능하며, 상기 배정세대의 "()"는 예비 추천자 수 임.

[※]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함.

^{*}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^{*}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터넷 청약 접수가 원칙이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 이상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해 분양홍보관 방문접수(10:00~14:00) 가능하며, 서류 미비 시 방문 접수 받지 않음.

Ⅱ. 신정자격 안내

□ 신청자격

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 29. 예정) 현재 '무주택세대구성원'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. 단<u>,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</u> 함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제외)

구분	신청자격
청약예금	전용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청약부금	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
주택청약종합저축	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

<청약예치 기준금액 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]>

구분	경기도	인천광역시	서울 특 별시	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	

- *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
- ※ 2018.12.11. 개정된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2호의3, 제2조의4에 따라 '세대' 및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 - "세대"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"세대원"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 [가] 주택공급신청자
 - [나]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- [다]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부.모, 장인.장모, 시부.시모, 조부.조모, 외조부.외조모 등
 - [라]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아들.딸, 사위.며느리, 손자.손녀, 외손자. 외손녀 등
 - [마]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전혼자녀 등
 -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

□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.
 - (단,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)
- 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, 다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(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)

□ 행정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분양홍보관에서 확인가능 하며, 확인 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,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
 - (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)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,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
 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첨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

Ⅲ. 당첨자 선정 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(청약Home)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(한국부동산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)

№. 기타 유의사항

□ 아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 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 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부양)에 **중복신청이**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
-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,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.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(한국부동산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. (미신청, 미계약 동.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)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**2022.07.29.(금) 예정**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콜센터(1533-3261)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2.07.29.(금)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.
- 이외 자세한 사항은 "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" 콜센터(☎1533-3261)로 문의 바랍니다.

V. 위치도 및 분양홍보관 위치

- * 분양홍보관 정식 오픈일 이전 관람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*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 1) 위치도 및 분양홍보관 위치



